

## 한변, 추미애 장관의 비밀번호 강제해제, 위법 감찰지시, 라임수사방해, 검찰총장 수사배제 등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

한변은 2020. 11. 16.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가 하면 대검찰청에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다.

■ 고발장 제출일시 : 2020.11.16 (월) 오후1:30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검찰총장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강요하는 것으로 피고발인 추미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장의 신분과 직무수행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추미애가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2020. 11. 12. 법무부에 휴대전화 비밀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지시 및 2020. 10. 19.자로 이루어진 피고발인 추미애의 수사지휘는 피의자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수사지휘로서 그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라는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을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줄것을 촉구한다.

2020. 11.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